

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760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, 2020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2019년도 결산결과 예치금과 결산 지적사항, 2020년도말 지출 예정액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

나.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서울소재 중소기업,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용자지원 확대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

○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조정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| 정책/세부사업 | 당초(A) | 변경(B) | 증감 (B-A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|
| 합 계 | 272,081 | 393,570 | 121,489 | |
| 중소기업 금융지원 | 260,648 | 314,280 | 53,632 | |
| 중소기업직접용자 | 215,000 | 265,000 | 50,000 | |
|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| 44,820 | 47,320 | 2,500 | |
| 기타 비용자성 사업비 | 828 | 960 | 132 | |
| 기금 업무대행 수수료 | | 1,000 | 1,000 | |
| 재무활동 | 10,433 | 78,590 | 68,157 | |
| 재정투융자기금원리금 예수금상환 | 2,618 | 2,618 | - | |
| 여유자금 예치 | 7,815 | 75,972 | 68,157 | |
| 행정운영경비 | 1,000 | 700 | △300 | |
| 기금관리비 | 1,000 | 700 | △300 | |

나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| 수입 계획 | | | | 지출 계획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항목 | 당초 | 변경 | 증감 | 항목 | 당초 | 변경 | 증감 | |
| 합계 | 272,081 | 393,570 | 121,489 | 합계 | 272,081 | 393,570 | 121,489 | |
| 용자금회수 (이자포함) | 174,045 | 174,045 | | 사업비 | 용자금 | 215,000 | 265,000 | 50,000 |
| 공공예금 이자수입 | 3,000 | 3,000 | | | 이자보전금 | 44,820 | 47,320 | 2,500 |
| | | | | | 기타비용(성사업비) | 828 | 960 | 132 |
| 예치금 회수 | 76,036 | 145,325 | 69,289 | | 기금업무대행수수료 | - | 1,000 | 1,000 |
| | | | | 재무동 | 예치금 | 7,815 | 75,972 | 68,157 |
| 일반회계 전입금 | 19,000 | 71,200 | 52,200 | 예수금 이자 | 2,618 | 2,618 | - | |
| | | | | 행정운영경비 | 1,000 | 700 | △300 | |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<이하생략>

○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조치 : 조치완료 ('20년 1회·3회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김은하 (☎2133-5190)